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. 3. 21 선고 2023가단36182 판결 [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
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박성용

피고(선정당사자) D

변 론 종 결 2024. 3. 7.

판 결 선 고 2024. 3. 21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

가. 피고(선정당사자) D은 별지1 목록 부동산에 대한 각 0.0624 지분에 관하여, 나. 피고(선정자) E는 별지2 목록 부동산에 대한 각 0.0401 지분에 관하여 2023. 9. 4.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들은 피상속인 망 F(2023. 4. 15. 사망)의 자녀들로서 각 1/17의 유류분이 있고, 피고들은 망인의 장남 및 망인의 손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별지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바, 원고들이 각 피고의 유류분초과액 및 각 원고의 유류분부족액과 각 부동산의 지분반환비율에 따라 산정한 별지 기재 유류분 반환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, 주문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정원석

별지